

의안번호	제 2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9월 5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23 호

제출연월일 : 2014년 9월 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난 2002년 조성된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완료에 따라 신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입주부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일부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과정에서 지정면적이 일부 축소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업단지(10-4, 15, 16BL)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업단지(15, 16BL)
매입규모	3블록 156,000㎡	2블록 108,430㎡(30.4% 감)
사업기간	2014. 3. ~ 2014. 12.	좌 동
사 업 비	26,072백만원 (국비 15,643, 도비 10,429)	18,915백만원 (국비 11,349, 도비 7,566)

※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비율 (60:40)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4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단위 : 건, m², 천원)

[illegible]

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108,430	18,915,000				
	건물							
	기타							
1	토지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업 단지 일원(15,16BL)	108,430	18,915,000	2014.12	진천산수 외국 인 투자지역 조성	진천산수산 업단지개발(주)	매입
	건물							
	기타							
2	토지		이	하	여	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